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3일

3. 제안사유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 초과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 근거 마련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성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4. 주요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기능 추가 (안 제7조)
 -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을 60% 초과하여 위촉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 심의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38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7조는, 시·군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직 위원 수의 비율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충청북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안 제38조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0. 12. 31.까지”에서 “2025년 12월31일까지”로 5년을 연장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는, 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외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서 지방양성평등기금의 설치를 의무가 아닌 필요에 따른 임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일: 9.11)를 거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양성평등기금 또한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금 현황

□ 개 요

- 설치근거 : 충청북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1조
- 목 적 :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 재 원 : 도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예 산 액	단 체 수	지 원 액	비 고
2016년	66,506	11	61,565	단체별(2,000~10,200)
2017년	55,000	13	54,624	단체별(2,000~7,000)
2018년	60,000	14	54,401	단체별(1,770~8,160)
2019년	50,000	13	49,719	단체별(1,060~9,460)
2020년	67,823	9	67,823	단체별(1,490~30,000)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단체의 사업포기(7개 사업)

□ 연도별 조성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수입내역(A)				지출내역(B)		잔액 (C=A-B)	연도말 조성규모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사업비		
'16	68,307	-	65,319	2,988	62,365	62,365	5,942	6,408,815
'17	359,108	300,000	52,308	6,800	55,224	55,224	303,884	6,712,699
'18	42,463	-	41,460	1,003	55,001	55,001	△12,538	6,700,161
'19	86,207	-	84,987	1,220	50,319	50,319	35,888	6,736,049
'20	114,214	-	112,987	1,227	68,423	68,423	45,791	6,781,840

□ 사업별 내역 < '20년도 집행액>

단 체 명	사 업 명	집행액(천원)	비고
추진 내역	9개 사업	67,822.2	
충북여성재단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	30,000	
	양성평등기금 사업 모니터링	5,000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의 미래, 청년·대학생의 지방의회 모니터링 '충북도의회 의원 양성평등 민감도조사'	4,996.2	
충북여성살림연대	마을카페에서 만나는 여성주의	7,720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 평등을 일상으로	3,590	
소비자교육중앙회 충청북도지부	인권평등, 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여성 의 역할교육 및 캠페인	5,700	
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연 아로마테라피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3,811	
청주성폭력상담소	양성평등을 향해 저출산을 향해 GO! GO!	1,490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우리집이 달라졌어요2 (여성장애인 가사정리 서비스)	5,515	